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사양서”를 “제조설명서”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배치함.
-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재 완

●대통령령 제23390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세율(%)
호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앵귤라종)		
		2. 기타		27% 또는 1천879원/kg 양자 중 고액(울)
0301	99	기타		
		1. 돔		
		나. 기타		28% 또는 2천52원/kg 양자 중 고액(울)
		2. 농어		
		나. 기타		28
		3. 기타	민어(민어과에 속하는 것만 해당하며, 참조기와 부세는 제외한다)	28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6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 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다 만,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	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25
0303	69	기타	명태	25
0303	8	그 밖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은 제 외한다.		
0303	89	기타	다음 각 호의 것	
			1. 푹치(학푹치는 제외한다)	28
			2. 민어(민어과에 속하는 것만 해당하며, 참조기와 부세는 제외한다)	43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와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0306	2	냉동하지 아니한 것		
0306	26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종, 크란곤 크란곤)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38% 또는 256원/kg 양자 중
0306	27	그 밖의 새우류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고액(울) 38% 또는 256원/kg 양자 중 고액(울)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와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를 불문한다), 연체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0307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 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와 오징어(움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		

0307	49	기타		
		2. 기타	냉동한 것(갑오징어와 연육은 제외한다)	22
0709		그 밖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0709	5	버섯과 송로		
0709	59	기타		
		2. 기타	표고버섯	40% 또는 1천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만 해당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3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트레멜라종) 및 송로		
0712	39	기타		
		1. 버섯		
		나. 표고버섯		40% 또는 1천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1902	1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902	19	기타 2. 당면		28% 또는 222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과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904	90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낱알 상태의 쌀로서 찌거나 삶은 쌀	50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3	20	토마토 케찹과 그 밖의 토마토의 소스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	45
2103	90	기타	다음 각 호의 것	
			1. 고추장	45
			2.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	45
			3. 메주	13% 또는 52원/kg 양자 중 고액(율)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4412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시트만으로 구성된 것만 해당하며, 대나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것만 해당한다)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39	기타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	기타		
4412	99	기타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1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5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찹쌀, 혼합조미료 등 10개의 품목은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기존 조정관세율을 유지하고, 수입 감소 등으로 국내 산업피해의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2퍼센트 포인트부터 4퍼센트 포인트까지 인하된 28퍼센트부터 43퍼센트까지의 조정관세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391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2012년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3		패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삼겹살	0	7만 메트릭톤
02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0203	2	냉동한 것			
0203	29	기타			
0703		양파, 쪽파, 마늘, 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5천400 메트릭톤	10	
0703	20	마늘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한다) 및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	2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6천185 메트릭톤	10	
0904	21	건조한 것(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별표 2]

2012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103		돼지			
0103	9	기타			
0103	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0	5천두
0103	92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포스종)·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전갱이(트라커러스종)·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뎀)·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다만,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	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0	1만 메트릭톤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0401	4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0	4천450 메트릭톤
0401	5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0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만 해당한다)		
0402	10	분상·입상 또는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0	5천600 메트릭톤
0402	2	분상·입상 또는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	21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650 메트릭톤
0402	29	기타	0	
0405		버터 및 그 밖의 지(脂)와 유(乳) (밀크에서 얻어진 것만 해당한다), 테어리 스프레드		
0405	10	버터	0	2천400 메트릭톤
0405	20	테어리 스프레드	0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		1만1천 500 메트릭톤
2106	90	기타		
		5. 기타		
		나.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0406		치즈와 커드		

0406	1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한)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다음 각 호의 것 1. 모차렐라 치즈 2. 크림치즈	0 0	7천 메트릭톤
0406	90	그 밖의 치즈	다음 각 호의 것 1. 체더 치즈 2. 가우더 치즈	0 0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그 밖에 저장처리를 한 것만 해당하며,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불문한다)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달걀 가루	0	100 메트릭톤
0504	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만 해당한다)	소시지 케이싱용으로 가공처리한 것	13	200 메트릭톤
0714		매니옥·칩뿌리·살렘·국아·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및 사교야자의 수			
0714	10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주정용	0	14만4천 메트릭톤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0806	20	건조한 것		8	수입전량
1001		밀과 메슬린			
1001	9	기타			
1001	99	기타			
		2. 제분용			
		가. 메슬린		0	156만 메트릭톤
		나. 기타		0	
1003		보리			
1003	90	기타			
		1. 맥주맥		0	3만5천 메트릭톤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3. 기타	가공용	0	141만 메트릭톤
1105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粒) 및 펠리트			
1105	20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0	1천500 메트릭톤
1107		맥아(볶은 것인지를 불문한다)			
1107	10	볶지 아니한 것	맥주 제조용	0	
1107	20	볶은 것			13만8천 메트릭톤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	0	
		2. 기타	맥주 제조용	0	

1108		전분과 이눌린			
1108	1	전분			
1108	14	매니옥(카사바)의 것	제지(製紙)용	4	1만2천 600 메트릭톤
1108	19	그 밖의 전분	고구마전분	7	2만2천 200 메트릭톤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1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식품용	2.5	수입전량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	10	벼어진		0	수입전량
1509	90	기타		0	수입전량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1	조유			
		1. 해바라기씨유		0	수입전량
1512	19	기타			
		1. 정제유			
		가. 해바라기씨유		0	수입전량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	1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1514	11	조유	0	수입전량
1514	9	기타		
1514	91	조유		
		1. 그 밖의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0	수입전량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90	기타		
		2. 기타		
		가. 미강유와 그 분획물	미강유	0 수입전량
		마. 기타	정제한 포도씨유	0 수입전량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1701	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701	12	사탕무당		
		1.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0	수입전량
		2. 당도가 98.5도를 초과 하는 것	0	수입전량
1701	13	이 류의 소호주 2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0	수입전량

1701	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0	수입전량
		2. 당도가 98.5도를 초과 하는 것		0	수입전량
1701	9	기타			
1701	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식품가공용	0	10만 메트릭톤
1701	99	기타		0	
1702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1702	1	유당과 유당시럽			
1702	11	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유당(무수 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유당	0	7천500 메트릭톤
1702	19	기타	유당	0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1806	20	그 밖의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그 밖의 벌크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것		
			1.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0	수입전량
			2.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0	2천500 메트릭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에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그 밖의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2008	1	견과류, 낙화생,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를 불문한다)			
2008	11	낙화생	피넛 버터는 제외한다.	24	5천 메트릭톤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	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 조주정		0	10만8천 킬로리터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천650만 배럴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상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수입전량
2711	12	프로판		0	수입전량
2711	13	부탄		0	수입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수입전량
2713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및 그 밖의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2713	1	석유코크스		
2713	11	하소(煨燒)하지 아니한 것	3	수입전량
2804		수소·희(稀)가스 및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	6	규소		
2804	69	기타	2	수입전량
2825		히드라진, 히드록실아민 및 그 무기염과 그 밖의 무기염기, 금속산화물, 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2825	50	산화동 및 수산화동		
		1. 산화동	2	수입전량
2833		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1	황산나트륨		
2833	11	황산이나트륨	1	수입전량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商)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만 해당한다)		
2836	20	탄산이나트륨	1	수입전량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2849	20	탄화규소	3	수입전량
2909		에테르, 에테르알코올,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 과산화알코올, 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젠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1	비환식에테르와 그들의 할로젠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19	기타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3	13만 메트릭톤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만 해당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2. 기타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합판제조용	4	수입전량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그 조제품(제 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류의 주 제3호의 것만 해당한다) 및 루미노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루타일(rutile) 형	3	수입전량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	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다음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 1. 덱스트린 2. 가용성전분(아밀로젠) 3. 배소전분 4. 프리젤라티나이지드 또는 스웰링 전분으로서 식품용의 것 5.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으로서 식품용의 것 6. 기타 식품용의 것	4	2만4천 메트릭톤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노광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및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를 불문한다)			
3701	9	기타			
3701	99	기타			
		1. 반도체 제조용인 것	블랭크 마스크	2	2만5천장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반콜로이드흑연 또는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블록상·판상 또는 그 밖의 반제품의 것만 해당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2차전지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4408	10	침엽수류			
		2. 기타			
		가.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4408	3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목재의 것만 해당한다)			

4408	31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2. 기타		
		가.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나. 메란티바카우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4408	39	기타		
		2. 기타		
		가. 티크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나. 화이트라왕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다. 시뵈, 오푸메, 오베체, 아까쥬다푸리케 및 사펠리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라. 림바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마. 마호가니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바. 기타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4408	90	기타			
		2. 기타			
		가. 황양, 화리, 철도목, 자단, 흑단, 학코리, 물푸레나무, 호두나무 및 참나무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나. 리그넘바이트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다. 사시나무, 포플러, 단풍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및 피나무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라. 오동나무			
		(1)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마. 기타			
		(1)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가)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2) 기타			
		(가) 합판 제조용인 것	2	수입전량	
7002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는 제외한다), 봉 또는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7002	20	봉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1	수입전량	

7002	3	관			
7002	31	석영유리제의 것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퀴즈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1	수입전량
7020	00	유리제의 그 밖의 제품			
		1. 공업용의 것			
		가. 석영유리제의 것			
		(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퀴즈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1	수입전량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7112	9	기타			
7112	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2. 기타	파쇄한 폐전자제품 스크랩으로서 귀금속 회수용 또는 동 제련용인 것	1	수입전량
7202		페로알로이			
7202	2	페로실리콘			
720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7202	4	페로크로뮴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7202	49	기타		0	수입전량
7202	50	페로실리코크로뮴		0	수입전량
7326		철강제의 그 밖의 제품			
7326	90	기타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 (오엘이디) 제조용 금속 마스크	4	수입전량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 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를 불 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7410	1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			
7410	11	정제한 동의 것	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인쇄회로기판 제 조용인 것	4	3백5십만 제곱미터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1	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0	수입전량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 크랩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 분			
		1. 괴		0	수입전량
8108	90	기타	판과 스트립 및 판은 제외한다.	3	수입전량
8475		전기 또는 전자 램프, 튜브,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체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 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 간가공용의 기계			
8475	2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	29	기타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 리 제조용인 것	4	수입전량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8486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1.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 건식식각기	4		수입전량
		3.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 증착기			
		가. 물리적 방식의 것	4		수입전량
		4. 기타			
				다음 각 호의 것	
				1. 그 밖의 건식식각기	수입전량
				2. 유리 또는 인조수정상에 금속막을 증착하는 기계(sputter)	수입전량

[별표 3]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불문한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불문한다)			

		1. 유장	사료용	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또는 유장농축 단백질	사료용	0	3만5천 메트릭톤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취뿌리·살렘·국아·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0714	10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사료용	0	20만 메트릭톤
		나. 펠리트	사료용	0	90만 메트릭톤
1002		호밀			
1002	10	종자	녹비(綠肥)용	1	6천 메트릭톤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겉보리	사료용	4	5만 메트릭톤

1004		귀리				
1004	90	기타	사료용	0		13만 메트릭톤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902만 메트릭톤 (사료용 900 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2만 메트릭톤)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1201	90	기타				
		1.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0		115만 메트릭톤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1205	1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 자)씨				
		2. 기타	채유 및 탈지박용	5		
1205	90	기타				
		2. 기타	채유 및 탈지박용	5		15만 메트릭톤
1207		그 밖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1207	2	면실				
1207	29	기타				
		1. 사료용		0		16만 메트릭톤

1213	00	곡물의 껍질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버섯재배용 밀짚	4	2만 메트릭톤
1214		스워드, 맵골드, 사료용의 근채류, 건초, 루우산(알팔파), 클로버, 샌포인, 케일, 루핀,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1214	10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1. 사료용		0	수입전량
1214	90	기타			
		2. 기타			
		가. 루우산(알팔파) 베일			
		(1) 사료용		0	수입전량
1214	90	기타			
		1. 사료용 근채류		0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0	51만 메트릭톤 (사료용 45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6만 메트릭톤)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1518	00	<p>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p> <p>3. 기타</p> <p>가. 사료용</p>		2	5만 메트릭톤
1702		<p>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p>			
1702	30	<p>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p>	<p>동물의약품 제조용 무수포도당</p>	6	2천200 메트릭톤
1703		<p>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 시에 생긴 것만 해당한다)</p>			
1703	10	<p>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p>	<p>사료용</p>	0	45만 메트릭톤
1703	90	<p>기타</p>	<p>사료용</p>	0	
2302		<p>밀기울·미강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p>			
2302	30	<p>밀의 것</p>	<p>사료용</p>	0	35만 메트릭톤
2303		<p>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 펄프, 버개스 및 그 밖에 설탕 제조 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한다)</p>			

2303	20	비트펄프, 버개스, 그 밖에 설탕 제조 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사료용 비트펄프	2	17만 메트릭톤
2303	30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1. 사료용		0	92만 메트릭톤
2304	00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사료용	0	270만 메트릭톤
2306		오일-케이크 및 그 밖의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물품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 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			
2306	10	면실의 것	사료용	0	16만5천메트릭톤
2306	5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사료용	0	20만 메트릭톤
2306	60	팜넛 또는 핵의 것	사료용	0	20만 메트릭톤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3. 면실피	사료용	2	11만 메트릭톤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억6천만 배럴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2814	10	무수암모니아	암모니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5 이상인 것	0	수입전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만 해당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1.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인 것	1	65만	메트릭톤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인 것만 해당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	3만8천	메트릭톤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2만	필프인 것은 제외한다.
3901	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3	2만4천	메트릭톤
5002	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메트릭톤
		1. 백잠사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나. 20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다. 25.56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0	700	메트릭톤
		라. 28.89데시텍스를 초과하고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		
		2. 옥사	0		
5004	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인 것은 제외한다)	0	300	메트릭톤
5005	00	견방사(견웨이스트인 것만 해당하며, 소매용인 것은 제외한다)	0	300	메트릭톤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인 것은 제외한다)			

5205	1	단사[코움(comb)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만 해당한다]		
5205	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는 제외한다.	0	수입전량
5205	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만 해당한다)		
5205	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는 제외한다.	0	수입전량
5205	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인 것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0 수입전량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인 것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	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5403	3	그 밖의 사(단사)		

5403	3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5403	32	비스코스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5403	3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4	수입전량
5403	4	그 밖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3	4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0	수입전량
5403	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4	수입전량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 이형단면인 것	0	수입전량
		2. 폴리노직 단면인 것	0	수입전량
		3. 기타	0	수입전량
7504	00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1. 분	3	수입전량
2903	39		4	
3402	90		4	
3808	91	농약완제품	4	5천 메트릭톤
3808	92		4	
3808	93		4	

2825	50			1	
2827	41			1	
2833	25	농약원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1	2만
2909	30		등록된 것	1	메트릭톤
2914	70			1	
2916	20			1	
2916	31			1	
2916	39			1	
2918	30			1	
2918	99			1	
2919	90			1	
2920	11			1	
2920	19			1	
2920	90			1	
2921	42			1	
2921	43			1	
2921	49			1	
2922	50			1	
2924	12			1	
2924	19			1	
2924	21			1	
2924	29			1	
2925	19			1	
2925	29			1	
2926	90			1	
2928	00			1	
2930	20			1	
2930	30			1	
2930	90			1	
2931	90			1	
2932	19			1	
2932	20			1	
2932	99			1	

2933	11				1	
2933	19				1	
2933	29				1	
2933	39				1	
2933	49				1	
2933	59				1	
2933	69				1	
2933	99				1	
2934	10				1	
2934	20				1	
2934	99				1	
2935	00				1	
2941	20				1	
2941	90				1	
3402	13				1	
3804	00				1	
3808	50				1	
3808	91				1	
3808	92				1	
3808	93				1	
3824	90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1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2개 품목 중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 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사료용 옥수수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귀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103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단기간의 가격변동 등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원당(原糖) 등 64개 품목은 2012년 3월 31일 또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39개 품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